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 〉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86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3월 31일 정점식위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 등

개정안은 ①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2조의2제1항 신설), ② 비상 공급조치의 내용에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이동식 정수시설 및 임시 급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③ 해당 조치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52조제5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국고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2조(국고보조) ----- ----- ----- -----.
<신설>	5. 제52조의2에 따른 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에 드는 경비
<신설>	제52조의2(비상 먹는 물 공급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

현행	개정안
	<u>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u> <u>1.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u> <u>2. 이동식 정수시설 설치</u> <u>3. 임시 급수시설 설치</u> <u>4. 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u> <u>③ 그 밖에 먹는 물 비상 공급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2025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¹⁾, 집중호우²⁾, 대형산불³⁾, 가뭄 등 기후재난이 계속 발생하였음.

특히, 강원 영동지역은 108년만의 극심한 가뭄⁴⁾으로 인해 강릉 지역

-
- 1) 2025년 6월~8월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1위(25.7℃)로, 2024년 25.6℃ 최고기록을 경신(자료: 관계기관합동,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 p.128 참조)
- 2) 2025년 7월 16일~20일 호우로 인한 총 피해액은 1조 848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최대 재산 피해 기록(자료: 관계기관합동,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 p.128 참조)
- 3) 2025년 3월 21일~3월 30일까지(10일간) 발생한 산불로 183명(사망 27명, 부상 156명)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 발생(자료: 관계기관합동,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 p.129 참조)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983년 준공 이후 최저인 11.5% 수준으로 급감하며 심각한 식수 부족 사태가 초래되었음.

2026년에도 이러한 가뭄 피해는 이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의 경우 2026년 2월 기준 3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37.2% 수준에 불과하여 주요 식수원인 욕지댐 저수율이 40.5%까지 저하됨에 따라 주민들이 심각한 식수난을 겪었음.

욕지도 주민들은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수원 부족과 노후 상수관로로 인해 제한급수⁵⁾를 겪고 있는 등 도서지역의 지형적 취약성과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고질적인 식수 부족 문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도서지역의 고질적 취약성은 향후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과 맞물려 가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바, 개정안은 식수 공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먹는 물을 긴급 공급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2025년 6월~9월 기간 강수량 232.5mm로 평년(679.3mm)의 34.2%에 불과(자료: 관계기관합동,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 p.84 참조)

5) 욕지댐 급수인원 1,943명 중 918명 대상 1일 5시간(09~14시) 제한급수 중(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정부, 통영 욕지도 가뭄에 선제 대응 나선다', 2026. 2. 2.)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6)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시 긴급 용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7)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재난 발생할 우려 시 또는 재난 발생 시 급수 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도법」 제41조8)에 따라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도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9)에 따라 국가는 자연재해 예방대책 및 응급대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

6) 「자연재해대책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6. ~ 7. (생략)

8) 「수도법」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①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도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에게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도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한다.

9)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교부세법」 제9조¹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으며, 「수도법」 제75조¹¹⁾에 따라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즉, 가뭄 등 비상 상황 시의 긴급 용수 공급, 급수 수단 확보 및 이에 수반되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재난 및 수도 관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강릉시, 2026년 2월 완도군 넓도 및 통영시 옥지도 가뭄 대응을 위하여 기존 법률에 따라 긴급 조치 및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가 이루어진 바 있음.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는 ① 현행법이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먹는물 관련 영업 전반에 대한 허가·기준·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다른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0)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생략)

11)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① 향후 이상기후 심화에 대비하여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망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② 기존 재난대응 및 수도 관련 법률에 비상 급수 및 국고보조가 근거가 반영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548